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- 에스아이오티(주)
산 학 협 력 협 약 서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에스아이오티(주)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·운영 및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류·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혁신적 창작 활동 지원과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 창업 저변 확대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을 증진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
2. 메이커 주간 등 각종 메이커행사 개최 협력
3. 시제품 제작, 제작 장비 공동활용
4. 예비 창업자 지원 협력

제 3 조 (협약의 변경) 협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 기관 협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조 (고지의무)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, 부득이한 협약의 해지는 사전 서면을 통하여 고지한다.

제5조(비밀유지 의무) 협약당사자는 협약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정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이 양해각서는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단,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양해각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도록 하며 본 양해각서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음을 확인한다.

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상기에 언급된 양자 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,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은 각각의 역할 및 협력사항을 성실이 이행하기로 하며, 업무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(날인)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06월 05일



대구대학교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
단장 박세현



S-IOT
Safety IoT Inc.

에스아이오티(주)

대표이사 남현유

